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72719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9. 선고 2021가소248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3.경 피고와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D사 신, 개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¹⁾,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잔액”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며,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5. 28.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 및 확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영수 및 확약서

일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원)

상기 금액은 D사 증축공사의 총 대금 중 마지막 잔금으로서 다른 하청업자들은 D사와는 공사대금으로 인한 어떠한 민형사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2019. 4. 30.까지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보수 공사를 무상으로 책임지고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금액을 영수하는 바입니다.

2018. 5. 28.

확인자(시공사): 원고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78,850,000원을 지급받았다²⁾.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15,6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즉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와 같은 추가 공사사실 및 합의의 존재 사실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 또는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총 공사대금이 15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한편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178,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은 있지만 계약서 외의 별건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과 관련한 주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석명권행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추가 공사계약이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21. 9.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한바 있으며, 이 법원에서는 ‘기존 구 건물보수공사비 등으로 원고의 거래처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2022. 10. 2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이 사건 공사의 마지막 잔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미지급 부가가치세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18. 6. 11.경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청구하면서 ‘D사 증축 공사는 공사비 156,000,000원, 부가세 15,600,000원, 총대금 171,600,000원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

5. 17.에서야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장 없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약정한 공사비 중 140,40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나머지 15,600,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믿기 어려울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흠,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1) 을 제1호증(민간건설공사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원,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제1심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조서 참조.